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466호
- 나. 제안자 : 김길영 의원 외 19명
- 다.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 라. 회부일 : 2025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상위 법령 조항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 띄어쓰기 등 용어가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 표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관련 법령 표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등 수정
  - “각호”를 “각 호”로 함 (안 제33조)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함 (안 제34조)

제1항제12호, 제40조제1항제10호)

-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함 (안 제34조제1항제12호가목)
- “관련시설”을 “관련 시설”로 함 (안 제34조제1항제13호, 15호, 18호, 안 제40조제1항제12호~13호, 15호)
- “생태계보호지구안”을 “생태계보호지구 안”으로 함 (제39조제1항제6호)

#### 나. 법 조항 지칭 표현 정비

-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 다. 법령 약칭 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함 (안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함 (안 제65조제2항제3호마목)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이 관련 법령 및 한국어 어문 규범을 따르지 않아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40조) 법령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며(안 제51조) 법령의 약칭을 표기함으로써(안 제65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4. (생략)</p>	<p>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b>각 호</b> ----- 1. ~ 14. (현행과 같음)</p>
<p>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11. (생략)</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u>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p> <p>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p> <p>나. ~ 라. (생략)</p>	<p>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b>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b> ----- -----</p> <p>가. <b>액화석유가스 충전소</b> ----- ----- ----- -----</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17. (생략)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 ⑤ (생략)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생략)

③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

13. -----  
----- 관련 시설. -----  
-----.

가.·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  
----- 관련 시설

16.·17. (현행과 같음)

18. -----  
----- 관련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생태계보호지구 안 -----  
-----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의  
료시설 중 -----

7. ~ 9. (현행과 같음)

10.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외한다)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생 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③ (생 략)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생 략)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3. ~ 9. (생 략)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12. -----  
----- **관련 시설** -----  
-----

13. -----  
----- **관련 시설** -----

14. (현행과 같음)

15. -----  
----- **관련 시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제3호의2** -----

-----  
-----  
-----  
-----  
-----  
-----  
-----  
-----  
-----

3. ~ 9. (현행과 같음)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p>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 계획위원회</p> <p>나. ~ 라. (생략)</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p> <p>바. (생략)</p> <p>4. (생략)</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p> <p><b>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 계획위원회</b></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b>마.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b></p> <p>바.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	--

## 나. 검토 내용

### “개정안 검토”

#### 1) 조례의 용어·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40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는 현행 조례에서 관련 법령 및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르지 않고 있는 용어·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b>각호</b> -----.

1. ~ 14. (생략)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 라.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17. (생략)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 ⑤ (생략)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생략)

③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1.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13. -----  
----- **관련 시설**. -----  
-----.

가.·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  
----- **관련 시설**

16.·17. (현행과 같음)

18. -----  
----- **관련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생태계보호지구 안** -----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 ②·③ (생략)

-----  
-----.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의**  
**료시설 중** -----
  7. ~ 9. (현행과 같음)
  10.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11. (현행과 같음)
  12. -----  
----- **관련 시설** -----  
-----
  13. -----  
----- **관련 시설**
  14. (현행과 같음)
  15. -----  
----- **관련 시설**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3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열거함에 있어 “각호”로 표기하고 있으나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경우 앞말이 숫자가 아닌 경우 앞말과 띄어 쓰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호”를 “각 호”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재판-, 2021.12월, p.99.

- 현행 조례 제34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제40조제1항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는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의 건축물 용도 분류를 인용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의 띄어쓰기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령상 표기에 따라 정비하는 것<sup>3)</sup>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39조제3항과 제40조제1항제6호는 보호지구와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각각 “생태계 보호지구안”과 “의료시설중”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각각 “생태계보호지구 안”<sup>4)</sup>과, “의료시설 중”<sup>5)</sup>으로 수정하는 것은 올바른 한국어 표기법에 따라 정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관련)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이하 생략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3) 법령상 표기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비하는 내용

	현행 조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제40조제1항제10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40조제1항제12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40조제1항제13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0조제1항제15호	묘지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재판-, 2021.12월, p.101.

- 의존명사 '중(中)'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표현에 해당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재판-, 2021.12월, p.100.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2) 가지번호 지칭 표현 정비 (안 제51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1조제2항제2호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조항의 가지번호 표기 방식이 법령 작성 기준과 다르게 기재된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생 략) 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3. ~ 9. (생 략)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b>제3호의2</b> ----- ----- ----- ----- ----- ----- 3. ~ 9. (현행과 같음)

- ‘안(內)’은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등과 함께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의존 명사에 해당

○ 현행 조례 제51조제2항제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sup>6)</sup> 인용하며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sup>7)</sup>에서 호에 가지번호를 신설하는 경우 읽을 때 “호의2”로 읽히, 조문을 기재하는 경우 “의2”의 형식으로 표기<sup>8)</sup>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가지번호를 정확하게 인용하여 조문 해석에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p.368~369.

(3) 가지번호 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보다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예시) 기존의 제0호 다음에 두 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0조(제0항)에 제0호의2 및 제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의2. -----

0의3. -----

8) 김계홍,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 2009.1.1.

(중략)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호에 있어서 가지번호를 신설할 경우 당해 호를 읽는 경우에는 “호의2”로 읽지만, 이를 조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의2”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하생략)

### 3) 법령 약칭 표기 (안 제65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5조제2항제3호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동일 법령을 반복 기재하고 있는 사항을 약칭(“법” 및 “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칭은 법령이 반복 인용되는 경우 조문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에 해당<sup>9)</sup>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 계획위원회 나. ~ 라. (생략)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 바. (생략) 4. (생략)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b>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 계획위원회</b> 나. ~ 라. (현행과 같음) <b>마.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b> 바.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2.12월, p.64.

- 정의 규정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서 약칭(略稱)이 있다.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 두는 것이다. 반면 약칭은 그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령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 방법이다.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 내용의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띄어쓰기 및 의존명사 표기 기준에 맞추어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 정합성과 문장 표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1조제2항제2호는 조항 번호 인용 과정에서 가지번호 표기 형식이 법령 작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인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문 내용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5조제2항제3호는 법령을 반복 인용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기술 원칙에 따라 조문의 간결성을 높이고 법령 간 인용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